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세분화하고,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개편하여 체육지도자 양성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446호 2014. 7. 7. 공포, 201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격검정의 합격 기준과 연수과정의 이수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검정의 합격 기준(안 제6조)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하고, 자격검정의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합격자는 해당 시험에서 각각의 만점의 7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함.

나. 자격검정계획의 제출(안 제10조)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수립된 자격검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격검정의 실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된 자격검정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다. 연수과정의 이수 요건(안 제13조)

연수대상자가 총 연수시간의 100분의 90 이상 참여한 경우에는 연수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함.

라. 연수계획의 제출(안 제16조)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립된 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연수계획을 연수 시작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발급(안 제18조)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청자가 필요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인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2. 26. ~ 3.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3건(체육지도자 자질 향상)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경기 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을“(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 지도자의 배치”를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 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 한다.

제4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격검정의 실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자격검정의 시행일,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검정기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전자문서로 된 수험원서를 포함한다)를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검정의 방법)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되,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수화로 응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실기시험: 실기기술과 지도능력

2. 구술시험: 해당 자격종목의 경기규칙과 운영방식의 이해도, 지도자의 적성 및 언어 구사력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채점은 해당 자격 종목별로(건강운동관리사의 경우에는 1개의 자격종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이 하여야 한다.

제6조(합격의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합격자는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자격검정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응답전

화 등을 이용하여 합격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자격검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의 기본 방침

2.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방침

4. 자격검정 시험의 합격자 결정

5.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자격검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격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격검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격검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자격검정의 응시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위원의 자격) ①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체육 분야의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체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체육분야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에 대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이나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자격검정과 관련된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앞으로 실시하게 될 자격검정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검정계획의 제출) ①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격검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격검정의 실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변경된 자격검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공고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수과정의 공고 등)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수과정을 시행하려는 경우 연수과정 시작일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연수과정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연수기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체육지도자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연수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연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수과정) ① 연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간을 정한다.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250시간 이상
2.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120시간 이상
3.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및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90시간 이상
4.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과정: 200시간 이상

5.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특별 연수과정: 40시간 이상

② 연수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연수과정별로 교과과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연수과정의 이수) ①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 연수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연수기관의 장은 해당 연수과정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연수 이수자 명단 등 연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연수의 중단) ①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1. 연수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연수를 받도록 한 경우

2. 연수를 극히 게을리 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에 연수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수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③ 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 중단 조치를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2.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 연수과정별 교과과정의 편성과 강사의 선정
4. 연수대상자와 연수이수자의 결정
5. 제14조에 따른 연수의 중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수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수기관의 부원장이 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수기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자격검정”은 “연수과정”으로 “응시자”는 “연수대상자”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연수계획의 제출) ① 연수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연수 시작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 시행의 공고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8조(자격증의 발급) ① 제6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13조에 따라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 받은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

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제6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13조에 따라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면제 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해당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2서식
2.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3서식
3.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4서식
4.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5서식
5. 청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6서식
6.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7서식

④ 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려는 자격증의 종류별로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체육지도자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20조(수수료)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는 자격검정기관, 연수기관 및 진흥공단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자격검정기관 또는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자격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전액
3. 연수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를 받지 못한 경우: 연수 수수료 전액
4. 자격검정 또는 연수 시작일 3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제21조(자격검정기관 등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하여 법 제11조의3에 따라 그 지정일로부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자격검정기관: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수기관: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22조(위반행위별 처분 기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격증을 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진흥공단”으로 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24조의2제2항 관련”을 “제23조제2항 관련”으로 하

고, 같은 표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제5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기관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3) 해당기관이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권자는 당해 연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응시자의 자격취득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을 시행한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4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바.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관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5호	시정권고	업무정지 4개월	지정취소
---	-----------------	------	-------------	------

[]체육지도자 배치
[]운동경기부 설치

면제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문서번호					
직장명		상시 종업원 수	명		
소재지		전화번호			
면제항목		면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면제신청사유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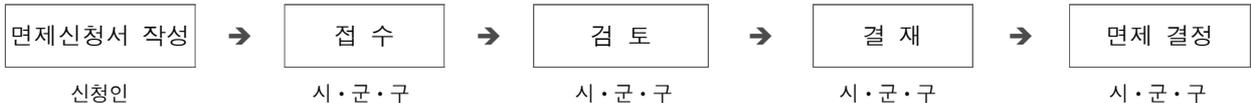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직장의 장)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 설치
[]체육지도자 배치**

보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문서번호			
직장명	상시 종업원 수	기관의 장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내역

종목	설치 연월일	체육동호인조직 및 운동경기부의 인원			체육지도자				체육시설 설치내용	연간 지원 예산액
		남	여	계	성명	자격증 종류	급수	자격증 번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
[]체육지도자 **내용**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발신인(직장의 장)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

※ 뒤쪽의 수험원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① 수험번호		② 자격종류		사진 (3cm × 4cm)
③ 자격등급		④ 자격종목		
⑤ 응시자격		⑥ 응시기관		
수험자	⑦ 성명(한글)			
	⑧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⑨ 전화번호(일반전화)		(휴대전화)	
	⑩ 주소			
⑪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대학(교) <input type="checkbox"/> 전문대학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기타	과	<input type="checkbox"/> 재학 <input type="checkbox"/> 휴학 <input type="checkbox"/> 졸업 <input type="checkbox"/> 수료	
동 의 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하여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자격검정기관의 장 귀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표

⑫ 수험번호		⑬ 성명		⑭ 생년월일	
⑮ 자격종류		⑯ 자격등급		⑰ 자격종목	
⑱ 응시기관		⑲ 시험 일시 · 장소			

년 월 일

자격검정기관의 장

직인

※ 주의사항

-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급의 자격 종목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수험자는 시험 응시 전에 반드시 종목별 “수험자 준비물” 을 확인하여 시험 시 지참해야 합니다.
-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수수료는 실기시험에 불합격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므로, 평일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발급 안내 : 준비물(증명사진 1장, 발급 수수료), 발급 장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인터넷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는 (기관별 홈페이지 주소)로, 각종 문의사항은 (기관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수험원서 작성방법

- 이 원서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구분 없이 사용하며, 자격종류, 자격등급 및 자격종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다음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진란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반명함판(3cm× 4cm) 규격의 상반신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2. 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3. 제출일 : 수험원서 원본과 수험표에 제출일을 쓰셔야 합니다.
 4. 자격종류 ② ⑬ : 응시하려는 자격종류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 전문스포츠지도사
 4. 자격등급 ③ ⑭ : 응시하려는 자격등급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 2급
 5. 자격종목 ④ ⑰ : 응시하려는 종목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 검도
 6. 응시자격 ⑤ : 응시하려는 자격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 국가대표선수
 7. 응시기관 ⑥ ⑱ : 응시하려는 자격검정기관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8. 성명 ⑦ ⑲ : 한글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⑧ :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10. 전화번호 ⑨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11. 주소 ⑩ : 주소는 주민등록표에 따른 주소로 작성하되, 세부주소(아파트인 경우 동·호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12. 최종 학력 ⑪ : 최종 출신학교, 재학·휴학·졸업·수료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로 표시하고 전공학과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2.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다만, 수수료는 검정 시행의 형태, 기간, 사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드립니다.)
3. 수험자는 수험(필기시험, 실기 및 구술시험)시부터 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해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 필기시험 1회를 면제받게 됩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적힌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볼펜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기시험은 반드시 수험자가 지원종목에 맞는 운동복 및 기구를 지참해야 합니다.
6. 수험자는 시험시간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를 제외한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수험자가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필기시험 접수마감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접수마감일]까지 수험자가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경우에는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합격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9. 필기시험 시간에는 답안지 작성 시간까지 포함된 것이며,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10. 수험원서 접수처 및 검정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

※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① 지원번호		② 자격종류		사진 (3cm × 4cm)
③ 자격등급		④ 자격종목		
⑤ 응시자격		⑥ 지원연수기관		
신청인	⑦ 성명(한글)			
	⑧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⑨ 전화번호(일반전화)	(휴대전화)		
	⑩ 주소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수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연수생은 연수 기간 중 연수에 필요한 자격 종목에 맞는 운봉복 및 기구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로부터 3년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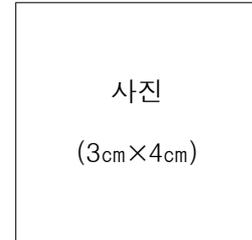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등급 :

자격종목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발 급 일 :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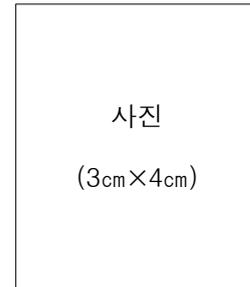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등급 :

자격종목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발 급 일 :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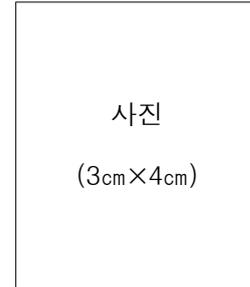


제 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성 명 :

생년월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발급일 :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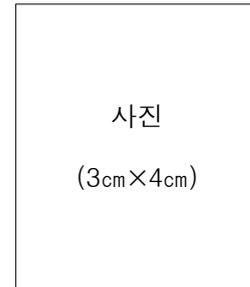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등급 :

자격종목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 및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발 급 일 :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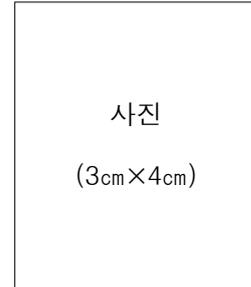
제 호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4 및 제18조제3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발 급 일 :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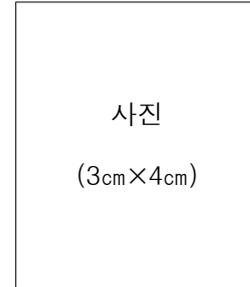
제 호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의5 및 제1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자격취득일 : 년 월 일
발급일 :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관리번호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격 취득 사항	자격종류			
	자격등급			
	자격종목			
	자격번호	제 호	취득일	
재발급 신청사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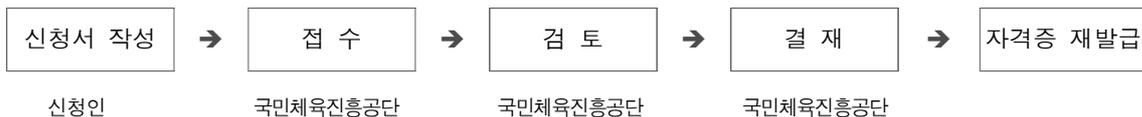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4cm 사진1장) 2. 변경사항 증명서류(해당자만 첨부합니다) 3. 체육지도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수수료
------	--	---

처리절차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문서번호				
추천기관명			전화번호	
수상후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체육상의 종류	비 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한민국체육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발신인(기관 또는 단체의 장)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2부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적 조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군 번 (군인의 경우)		
현주소			
직 업	소 속	직 위(등급)	
근무기간 (수공기간)	공적 분야		

공적 요지(50자 내외로 작성)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사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골프장(회원제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수납명세서

(년 월분)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골프장명(법인명)			
골프장 소재지		전화번호	

<부가금 수납 명세>

구 분	입장료 단 가	부가금 단 가	이용(입장) 인원	부가금 수납액	부가금 수납 수 수 료	수납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금 납부액
합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프장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수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하게 할 수 있는 연수원은 경기
지도자연수원과 생활체육지도
자연수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경기지도자연수원과 생활
체육지도자연수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연수 과정 및 교과) ① 경기
지도자연수원에는 1급 경기 지
도자 과정과 2급 경기 지도자
과정을 두고, 생활체육지도자연
수원에는 1급 생활체육지도자,
2급 생활체육지도자 및 3급 생
활체육지도자의 일반과정 및 특
별과정을 둔다.

② 연수원(경기지도자연수원 및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 따
른 연수 과정과 별도로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 중

은 자격검정의 실시일부터 1개
월 전까지 자격검정의 시행일,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자격검정
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검정기관
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
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육지
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전자문
서로 된 수험원서를 포함한다)
를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검정의 방법) ① 영 제
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
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
로 평가하되, 실기시험에 합격
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수화로 응시하
도록 하여야 한다.

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과정을 들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각 연수 과정별로 교과과정을 정하되,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수원을 지정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이하 “관할 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연수 과정별 연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연수 과정별 교과과정을 승인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승인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연수계획) ① 연수원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연수 시작 1개월 전까지 변경된 연수계획을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기시험: 실기기술과 지도능력

2. 구술시험: 해당 자격종목의 경기규칙과 운영방식의 이해도, 지도자의 적성 및 언어 구사력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채점은 해당 자격 종목별로(건강운동관리사의 경우에는 1개의 자격종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이 하여야 한다.

제6조(합격의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및 구술시

협의 합격자는 실기시험과 구술 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자격검정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하여 합격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④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연수 시행) ① 경기 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영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수료하여야 할 연수 과정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해당 연수 과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 과정을 이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연수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

제7조(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자격검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의 기본 방침
2.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방침
4. 자격검정 시험의 합격자 결

서를 포함한다) 1부

2. 영 제9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또는 영 제10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반명합판 사진 1장

4. 신분증 사본 1부

③ 연수원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심사 및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한다.

1. 1급 경기 지도자: 면접시험

2. 1급 생활체육지도자: 논문 및 운동처방론·기능해부학·운동생리학의 기초이론 시험

3. 2급 경기 지도자, 2급 생활체육지도자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 실기 및 구술시험

④ 연수원장이 해당 연수 과정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연수 시작 1개월 전에 연수 시행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

5.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자격검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격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격검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격검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

제8조(연수기간) ①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연수 과정별 연수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원장이 정한다.

1. 1급 경기 지도자 과정: 590시간 이상
2. 1급 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정: 230시간 이상
3. 2급 경기 지도자 과정 및 2급 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정: 각각 160시간 이상
4. 3급 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정 및 특별과정: 각각 60시간 이상

②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연수 과정의 연수기간은 해당 과정의 내용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료증 발급) 연수원장은

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자격검정의 응시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위원의 자격) ① 영 제

각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해당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서 정한 해당 연수 과정별 연수시간의 100분의 10 이상을 불참한 사람에게 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10조제5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체육 분야의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체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기 시험 및 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에 대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이나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자격검정과 관련된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앞으로 실시하게 될 자격검정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연수결과의 보고) 연수원 장은 연수 과정별 연수결과를 해당 연수를 끝낸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검정계획의 제출) ①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격검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격검정

의 실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된 자격검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공고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방침의 수립
2. 연수계획
3. 교과과정 편성과 강사 선정
4. 연수대상자의 선정
5. 수료자에 대한 심사 결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11조(연수과정의 공고 등)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수과정을 시행하려는 경우 연수과정 시작일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연수과정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연수기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체육지도자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연수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연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수과정) ① 연수기관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수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수원의 부원장이 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수원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자격검정 시행 등) ①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연 1회 시행한다. 다만, 영 제11조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을 실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간을 정한다.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250시간 이상

2.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120시간 이상

3.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및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90시간 이상

4.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과정: 200시간 이상

5.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특별 연수과정: 40시간 이상

② 연수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연수과정별로 교과과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연수과정의 이수) ①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시하는 기관(이하 “검정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필요에 따라 자격검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검정실시기관의 장은 검정 시행일 1개월 전에 검정 시행일 · 장소 · 과목 · 방법, 그 밖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자격검정 신청)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정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검정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1부
2. 제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수과정의 수료증 사본(전자문서로 된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포함한다) 1부
3. 반명합판 사진 3장

3년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 연수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연수기관의 장은 해당 연수과정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연수 이수자 명단 등 연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연수의 중단) ①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1. 연수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한 경우
2. 연수를 극히 게을리 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에 연수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4. 신분증 사본 1부

제15조(자격검정의 방법) ① 1급 경기 지도자와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2급 경기 지도자, 2급 생활체육지도자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실기와 구술시험 및 필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2급 경기 지도자, 2급 생활체육지도자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실기와 구술시험을 본 경우에는 그 시험으로 전단에 따른 실기와 구술시험을 갈음한다.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수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③ 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 중단 조치를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2.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 연수과정별 교과과정의 편성과 강사의 선정
4. 연수대상자와 연수이수자의 결정
5. 제14조에 따른 연수 중단에

②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와 구술시험은 자격 종목의 실기기술과 지도능력, 지도자의 적성 및 언어 구사력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③ 자격종목의 실기시험은 검정 실시기관의 장이 해당 자격 종목별로 위촉하는 2명 이상의 실기 심사위원의 심사에 따르며, 검정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종목에 대한 실기 시험을 대학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수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수기관의 부원장이 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수기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검정”은 “연수과정”으로 “응시자”는 “연수대상자”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검정과목)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연수계획의 제출) ① 연수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연수 시작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 시행의 공고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합격의 결정 등) ① 실기와 구술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하고,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

제17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경기 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동급에 해당하는 경기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또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동급에 해당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연수 및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시험실시 계획 및 결과 보고) 영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또는 체육단체가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정시행 공고 예정일 15일 전까지 그 실시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합격자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8조(자격증의 발급) ① 제6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13조에 따라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제6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13조에 따라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면제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해당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2서식

2.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3서식

3.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4서식

4.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5서식

5.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6서식

6.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7서식

④ 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려는 자격증의 종류별로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체육지도자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제19조(자격증의 발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과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증은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하되, 각각의 자격증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자격 종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하려는 자격증의 종류별로 체육지도자 등록부에 기록하고 검정실시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한다.

제20조(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

한다.

제19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 9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20조(수수료)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는

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자격검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영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정실시기관에 체육

자격검정기관, 연수기관 및 진흥공단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자격검정기관 또는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자격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전액
3. 연수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를 받지 못한 경우: 연수 수수료 전액
4. 자격검정 또는 연수 시작일 3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제21조(자격검정기관 등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하여 법 제11조의3에 따라 그 지

지도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자격검정위원회(이하 “검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에 필요한 기본방침
2. 자격검정 시행계획과 세부지침
3. 자격검정 시험출제 방침
4. 자격검정 시행 방법과 합격자 심사 결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검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

제22조(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검정실시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정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정일부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자격검정기관: 영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수기관: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22조(위반행위별 처분 기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검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검정실시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체육 관련 과목 이수자 등에 대한 자격 부여) ① 영 제9조제4항 및 영 제10조제3항·제6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 및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2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영 제10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1급·2급·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격을 부여할 대상과 요건, 자격인정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격증을 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
서 정한 것 외에 연수원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원장
이 정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에 필요
한 사항은 검정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검정실시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또는 체육단체인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의2(체육지도자의 자격취
소 등) ① 「국민체육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
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격
증을 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
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
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은 별표 5와 같다.

제30조(자금의 용자 절차 등) ①

<삭 제>

<삭 제>

제30조(자금의 용자 절차 등) ①

(생략)

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용자받으려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용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생략)

<신설>

(현행과 같음)

② -----
----- 진흥
공단-----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